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3. 9. 5(목) 14: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경재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9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지난 차 회의에서 보류된 <의결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13-33-129)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4년도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등 5개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종편·보도 PP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 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방송분야는 3명, 법률분야 3명, 경영·회계분야 3명, 기술분야 2명, 시청자·소비자 단체 3명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를 평가하고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입니다. 심사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은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외부전문가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과 제17조제3항에서 명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심사사항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송평가 내용입니다.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 사항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는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리보호 등입니다. 이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하위 심사항목으로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리 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두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위반 사례'와 관련해서 연구반에서는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별도 심사사항으로 구성해서 중복 감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리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감점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해 왔습니다만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다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및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인데 이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기획·편성의 적절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심사항목으로 두고자 합니다.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심사항목으로 두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두고자 합니다.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하였지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시켜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이며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이며,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별 배점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방송평가'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리보호 등' 그리고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표>를 보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편 PP의 경우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35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리보호 등 23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20점,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처리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도 PP 재승인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리보호 등 28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3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2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40점,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점, 그리고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심사항목별 배점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여부 결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

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리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신청 공고하고, 10월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겠습니다. 10월~12월까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는 한편 내년 1~2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월 중에 재승인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절차는 내년 5월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먼저 전차 회의에서 의견이 상충했던 부분이 정리된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첫째,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1명이 14명으로 늘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하면 15명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방송분야, 법률분야, 기술분야, 시청자 · 소비자단체 1명씩을 포함해서 위원장까지 총 15명으로 늘린 것, 두 번째는 종편의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350점으로 확정하고, 세 번째로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에 대해 230점으로 10점을 늘리고 지역사회 발전기여가 종편은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10점을 낮춰서 확정한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네 번째로 일단 과락에 대해 심한 논란이 있었는데 원안에는 40% 과락으로 일괄해서 정했던 것을 2가지 분야, 즉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부문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이 2가지에 한해서 과락을 50%로 높이고, 미달하는 경우에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부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한 부분입니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한 내용을 주의, 경고 등의 감점으로 나가더라도 1점~4점밖에 감점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가 특별히 심사위원회

에 대해 총 230점의 공적책임 부문이 전체가 비례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산술적으로 1점이나 4점을 감점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춰서 공적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심사위원단에게 주문할 것을 제안드렸고,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제도 논의가 있었지만 과락을 60%로 할 것이냐, 40%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 끝에 50%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재승인'으로 그칠 것이냐, 혹은 '재승인 거부'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승인 거부가 붙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종편 심사 전체에 대해 650점 총점 과락을 놓고서도 '재승인 거부' 혹은 '조건부 재승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탈락시킬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공적책임과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분야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문에 있어서 특별한 과락 퍼센티지를 높이면서도 그 점에 대해 관대하게 '조건부 재승인'만을 허가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한 정신에도 원천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로 명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금 부위원장께서 쭉 정리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어제 회의가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다시 하자고 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아까 정리한 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지상파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8페이지 <'14년 종편·보도PP 심사사항 배점 비교>를 보면 <1>번 방송평가 위원회의 방송평가, 금년도 지상파 재허가의 기준이 400점인데 350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2>번 지상파는 235점인데 230점으로 했으면 이것도 강화한 것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지상파는 75점인데 160점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4>번도 지상파는 65점인데 80점으로 강화하고, <5>번도 마찬가지로 50점에서 60점으로 강화하고, <8>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점 자체가 굉장히 강화된 것입니다. 강화되어서 공정성이 나아지고 방송이 계속 나아지면 좋은데 강하게 하는 것만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상파나 기존 사업자의 형평성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것이고, 앞으로 재허가나 재승인 시에는 전부 다 강화된 기준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오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강화되었을 때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의 입장도 보면 굉장히 암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을 때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왜곡도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주 강화하는 것만이 문제일까, 이런 데 대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화된 안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사실 나중에 심사위원장은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따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위원장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감점의 배점 1점, 2점, 4점 하는 부분은 부위원장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규정을 고쳐서 가야 할 것이다, 이 시점부터 가야 할 부분은 아니고 규정을 고쳐서 가

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0% 미달됐을 경우 ‘조건부 재승인’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넣자고 다시 제안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7>번 재승인 여부 결정 부분이 있습니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재승인 거부를 해야 할 만큼 종편 중 어느 하나가 심사결과가 나빴다면 여기에 반드시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재승인 거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탈락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탈락할 수 있습니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40%에 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50%가 될 경우에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해 놓았을 경우 위의 40%와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냐, 일관성을 가지게 하면서 위에 650점의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로 가고, 그다음에 과학의 경우 40%, 50%가 있는데 그것은 다 ‘조건부 재승인’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어제도 정리한 것인데, 제 생각에는 오늘 사무국에서 정리해 온 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지상파 수준이라는 것, 지상파가 기준점이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면 1페이지 처음에 보면 왜 재승인 심사를 하느냐, 콘텐츠 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재승인에 대한 문제를 심사하기 때문에 지상파가 기준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상파가 기준점이면 국민들이 익숙한 지상파 콘텐츠라는 눈높이에 국민들이 맞춰져 있으면 종편이나 보도PP도 지상파 수준의 콘텐츠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재승인 심사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지상파 콘텐츠 수준에 맞춰 주기 위해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상파에게 적용했던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맞춰 주기 위해 지상파보다 훨씬 떨어지는 콘텐츠 질을 보유하고 있는 종편이나 보도PP에게 그 지상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상파 수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높은 심사기준을 주어야 그 부분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맞춰질 것 아니냐는 부분에 있어서 지상파 기준점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는데 연구반에서 1회의 공청회와 1회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두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상당히 고양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종편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연구반이 조금 더 높은 심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무국에서 보고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면서 연구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보다 다 낮췄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는 누구든지 어떤 관점에서 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들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배점을 말씀하셨는데 <3>번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에서 ‘13년 지상파 재허가 때는 75점이었는데 종편PP 재승인 때는 160점이다, 엄청나게 강화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봅시다. 지상파가 기본적으로 장르 부분을 뛰어넘거나 그다음에 장르 부분에 있어서 규정을 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작계획에 있어서 지상파 3사가 평균 4,500~5,000억원의 제작비를 투여하고, EBS가 600~700억원의 제작비를 투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계획의 적절

성에 있어서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편의 장르 준수율이나, 종편이 도대체 종편인지 토론 전문채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장르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그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보다 2배 정도 높은,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높은 그러한 배점이 가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종편을 심사하는, 2013년 9월에 준비해서 2014년에 종편을 심사하려면 2013년 9월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들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강화했다고 자꾸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승인 이야기입니다. 조건부 재승인이 얼마나 허무한지 한 번 봅시다. TV조선, JTBC, 채널A 승인조건입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 이후에 선정 당시의 승인조건인데 승인조건으로 9개가 있습니다. 다의 무였고, <6>번을 보면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이것이 승인조건 <6>번의 <가> 내용입니다. <나>는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라> 콘텐츠 제작자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마> 국내 방송장비,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이런 내용이 승인조건이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종편에서 지역방송 밀착 프로그램 만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담당 과장,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관련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지난번에 이행실적 점검했지 않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점검했는데 구체적으로 밀착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담당 과장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승인조건 이행의 여부에 대해서도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조건부 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주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 한 나라가 빨칵 뒤집힐 만큼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문제제기하고 그리고 쉽게 합의 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루를 늘려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우리 회의 끝나고 나서 언론들 하나 같이 '종편 심사 대폭 기준 완화', '후퇴' 이러한 여론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라는 그것도 '또는'인데 재승인 거부만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들을 굳이 배제시켜야 하느냐고 했었을 때, 저는 합의제 위원회 구조에서 이 문제가 정파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공히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5명의 상임위원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거부’라는 부분들을 단일안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는’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재승인’이 될 수 있고, 잘했다 하더라도 59점 또는 649점이면 ‘재승인 거부’가 의결될 수 있는 부분이면 이러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심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 계획들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긴장감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제가 추가로 홍 위원님 말씀하신 2가지 지적에 대해 반론하겠습니다. 첫째, 방통심의위원회의 제재점수가 1점, 2점, 4점 하는 것이 지상파와 연계되어 있고, 우리의 방송규칙과 통일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그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되, 그렇다면 지금 230점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에서 그것을 세분해 보면 140점이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고, 70점 시청자 권리보호, 20점 신청법인의 적정성 그리고 관련 법령 위반사례 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점 중에 1점, 2점, 4점을 감점해도 본 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종편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공적책임을 둔는 140점 중에서 1점, 2점, 4점을 들어내더라도 또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심사위원회에게 실질적으로 방통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민간 자율이 결정하고 또 방통위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제재를 결정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실효성 있게 재승인 때 반영하라는 것을 위원회가 하부기관인 심사위원회에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50% 미달 시 과락을 부여하는 문제도, 지상파의 기준이 금과옥조가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지상파와 종편 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차이를 보면 지상파의 기준만 가지고 종편을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일반화의 오류가 아주 심각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입법 시에도 특가법도 있고 또 특정 범죄는 가중처벌하는 것에서 보듯이 지금 종편이 그동안 저질러온 특수한 범법들을 보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50%라고 하는 평균적인 일반 과락 40점을 벗어난 2항목 공적책임과 3항목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성을 우리가 부여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실효성이 있으려면 ‘조건부 재승인’이라고 하는 그런 솜방망이에 머물지 아니하고 ‘재승인 거부’까지 명기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상당히 숙달된 선수가 나와서 달리는 것과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방송내용의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마를 하는 사람에게 너 100m 13초에 뛰어라, 14초에 뛰어라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해서 걸음마하는 수준이 급격하게 신장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야 하지만 그런 취지에서 저도 어저께 ‘계량평가 점수 배점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

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논의 끝에 그것도 조정하는데 동의했고 공공성 부분도 배점이 강화되는 것까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과락 점수를 40%에서 50%까지 올린 것도 그것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달리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편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재승인 거부’까지 붙이자는 것은 어저께 서로 논의한 정신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이 다시 나온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점이 굉장히 작아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수차례 방송정책을 접하면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미미한 차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저도 제시했었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점수를 강화하는 것은 별도의 장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종편 사안을 심사하면서 바로 올려서 그것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일관성이나 전체적으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본다면 당초 안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말씀을, 달리는 능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빨리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 성인이나 유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장 쟁점이 붙고 있는 부분들이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리보호라는 문제가 핵심 쟁점의 대표적인 배점 사례인데 이 부분은 달리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달리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똑바로 뛸 것이냐, 옆으로 빠질 것이냐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오늘의 현안을 정확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부분입니다.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40%에서 50%까지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상징적인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리하지 못하고 끝난 부분이 거부의 문제를 ‘또는’이라고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심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 기본적인 긴장감들을 주어야 한다, 일반 언론에서 봐도 이것이 그냥 종편 봐주기 아니냐는 비난성 기사가 쇄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종편의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의 역할로 ‘거부’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통 크게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결론은 현재 배점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만, 과락과 관련해서 50% 미만을 받았을 경우에 조건부 승인할 것이냐, 아예 거부까지 새로운 용어를 넣을 것이냐 그 문제지요?

○ 김충식 부위원장

- or, 혹은….

○ 이경재 위원장

- 우선 일반론적으로 제가 케이블TV를 시작할 때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지상파방송은 정말 국민의 전파를 활용하는, 거기에 ‘국민의 방송’이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TV 시작할 때는 유료방송으로 특별히 이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규제를 지상파보다는 완

화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았고 그런 면에서 지상파보다는 여러 가지 기준을 굉장히 약화시켜서 광고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기준도 케이블TV는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종편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궁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지탄을 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 방통위원장으로서도 여러 차례 경고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적인 바람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반에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연구반에서 실어놓은 것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 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이 부분은 높여서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렸고, 또 정치권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처음의 안보다는 <2>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도 180점으로 올렸는데 230점으로 올렸고,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20점이 줄어든 것 같지만 지상파보다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지상파가 40%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의 점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2>번, <3>번 항목에 관해서는 50%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강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거부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논의 같은데 이 부분은 거부해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거부도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두 표현을 넣더라도 심리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것은 있을지라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과 또는 '재승인 거부'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위원장으로서 넣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위원장님 뜻을 짐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워딩이 중요합니다.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 이경재 위원장

-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면 되지요?

○ 홍성규 상임위원

-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시지요.

○ 이경재 위원장

- 알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 정도로 하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렇게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6.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45분 폐회 】